

소속직원 겸임 허가 세부 지침

제정 2019. 2. 28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인사규정 제32조(겸임)과 관련하여 (재)한국학호남진흥원 (이하 '호남진흥원'이라 한다) 소속직원의 대학출강 등 겸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겸임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겸임을 하고자 하는 호남진흥원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, 소속직원이 대가를 받고 대학출강 등 외부강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(겸임 허가기준) 겸임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강의시간이 일주일에 8시간(강의장소까지의 왕복소요시간 포함)이내의 경우에만 허가한다.
- ② 겸임은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부서장의 겸임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가한다.

제4조(허가제한) 겸임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① 겸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겸임으로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진흥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5조(복무사항) ① 겸임 활동은 출장을 신청하여 실시하고 이때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.

- ② 겸임 활동시에도 일주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이행해야 한다.

제6조(신청방법) 직원이 겸임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효력발생) 겸임 허가는 원장의 허가를 받은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겸임 허가 신청서

인 적 사 항	소 속			직 위		
	직 급		성 명		주 민 등 록 번 호	
강의일시 및 시간						
강 의 장 소 (소재지)						
강 의 과 목 또는 주제						
겸 임 기 간	부터 까지	강의회수 및 시간		월 횟수 : 월 강의시간 :	회 시간	
강 의 요 청 기 관			겸 임 시 그 직 위			
강 의 시 (겸임시)받는 보수	. 1회 강의시 : . 월 보수 :					
강의내용의 직무 관련성	.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- . 강의내용과 성격 - .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					
직무전념에 미칠 영향 정도						

※ 붙임. 겸임(강의)기관의 강의 요청서 사본 1부. 끝.

2019. . .

신청자

(인)

(재)한국학호남진흥원장 귀하